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기업의 대응방안

채 육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I. 서 론

WTO는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을 축소하고 국제무역에 있어서 차별적인 대우를 폐지함으로써 국가간 교역을 확대한다는 취지하에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freer and fairer trade)'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WTO 출범에 따른 일련의 국제무역 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무역장벽 철폐라는 WTO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와 같은 과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두된 것이 WTO 뉴라운드 출범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당초 WTO는 제3차 각료회의(시애틀 각료회의, 1999.11.30~12.3)에서 21세기의 다자무역질서를 관할할 새로운 무역규범을 논의하기 위한 뉴라운드의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각국간의 침예한 의견대립, 협의기간의 부족, 미국의 소극적 태도, 개도국 및 비정부단체(NGO)의 영향력 증대, 회의진행 및 의사결정방식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인해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각료회의가 결렬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의 출범 필요성에 대해서는 WTO의 많은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WTO 차원 또는 양자간 및 기타 국제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진전상황을 살펴볼 때, 뉴라운드는 금년 말 미국 대통령선거이후에 출범할 가능성이 크

지만, 그 이전의 출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농업 및 서비스협상은 포괄적 뉴라운드의 출범과 관계없이 이미 금년초부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에 국가경제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1999년, 무역의존도 64.8%)로서는 뉴라운드협상의 의의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WTO 뉴라운드의 논의동향과 의의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작년 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의 드실과 향후 협상전망을 살펴보자 한다. 또한, 제4장에서는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각국의 입장을 토대로 향후 뉴라운드협상이 개시될 경우 예상되는 주요쟁점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제5장에서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변화하는 세계교역환경 하에서 우리 기업이 당면한 과제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II. 논의배경 및 의의

WTO 체제의 출범으로 무역자유화는 더욱 확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자체제가 안정적인 틀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교통통신 과학기술의 발달로 국제무역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통상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통상이슈에 대해 보다 진전된 자유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것이다.

뉴라운드에 관한 논의는 1996년 제1차 각료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호주가 전반적인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을 최초로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우루파이라운드 협정에는 농산물 서비스분야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일부 의제, 즉 기설정의제(Built-In-Agenda : BIA)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협상이 약속되어 있는 바, 그와 같은 후속협상에 대한 논의가 뉴라운드 논의로 발전된 것이다. 후속협상은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에 제한된 것이었으나, 호주의 제안으로 보다 광범위한 성격의 뉴라운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APEC, OECD, ASEM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호주와 EU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뉴라운드 논의는 더욱 현실화되었다.

특히, 환경,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통상이슈들은 각국의 교역패턴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다자간 규범의 필요성이 보다 광범위한 형태의 뉴라운드에 관한 논의를 부추기게 된 것이다. 이미 1996년 제1차 각료회의에서는 무역-투자, 무역-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에 관한 작업반의 설치가 결정되었고, 1998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각료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이 채택된 바 있다.

이와 같이, WTO 뉴라운드의 논의는 우루파이라운드협상의 미해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무역자유화를 보다 촉진시키고 새로운 통상이슈(new issues)들을 다자체제로 편입시킬 필요성에 따른 일부 국가의 주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뉴라운드의 협상범위를 감안할 때, 뉴라운드는 본질적으로 세가지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과거 우루파이라운드협상에서 완전히 타결되지 못했거나, 또 타결된 분야에 있어서도 이행이 미진한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을 함으로써 기존의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자유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뉴라운드 논의의 시발점이 농산물과 서비스 등 우루파이라운드협정상에 이미 논의하기로 약속되었던 기설정의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오랜기간동안 GATT가 관리하지 못했던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는 비록 우루파이라운드협상을 통해 다자체제로 편입되었으나, 그들 분야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한 국가간 이해대립으로 우루파이라운드협상에서는 세부적 문제에 있어서의 타결을 거의 보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통해 가능한 한 예외적 규정의 범위를 대폭 줄이고 완전한 협정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상의 결과가 미흡하거나 이행 전망이 불확실했던 위생 및 검역,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섬유 및 의류, 그리고 분쟁해결절차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추가협상을 벌여 다자간규범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갖추겠다는 것이 뉴라운드 출범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의의라고 하겠다.

뉴라운드의 또다른 의의는 새로운 통상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각종 이슈에 대해 국제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역자유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통상이슈는 주로 국내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무역과 연계되는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분야들이다. 그와 같은 분야들에 대한 국제규범의 틀이 제정되지 않고서는 이제 실질적인 무역자유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 있는 협상대상 분야로는 무역과 관련된 경쟁정책, 투자,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들 대부분이 협상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새로운 통상이슈의 국제규범화는 금번 뉴라운드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국내문제와 직결되는 또다른 통상이슈들을 국제규범화시키는 데에도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뉴라운드는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다자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겠다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WTO 규범의 확대 및 이행강화, WTO의 감독 및 규율기능과 분쟁해결기능 등의 제고를 통해 제도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각종 지원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한 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다자체제에 편입시키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의 기능까지 두루 갖추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경제간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가는 환경에서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은 필연적인 현상이며, 그와 같은 양자의 역할이 세계무역과 후생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뉴라운드를 통해 WTO가 경쟁환경을 보완할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III. 제3차 WTO각료회의의 특실과 향후 협상전망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된 제3차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 협상의제와 관련하여 각국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되었다. 동 각료회의는 국가간의 합의를 통해 뉴라운드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출보조금의 감축폭을 둘러싼 농업문제, 반덤핑 개정, 무역-노동 등의 분야에서 회원국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뉴라운드 출범과 관련된 협상이 중단된 것이다. 금번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폐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의제가 제기된 데에 비해 의제선정을 위한 협의기간이 절대적으로 짧았다는 것이다. WTO 뉴라운드 관련 준비는 9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3단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제1단계(98.10~99.2)에서는 협상이슈를 발굴하고, 제2단계(99.3~99.7)는 협상의 범위, 방식 및 일정 등에 대한 각국의 제안을 중심으로 회원국간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단계였으며, 제3단계(99.9~11)는 제2단계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이슈

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는 동시에 각료회의에서 발표할 각료선언문을 작성하는 단계였다(<표 1> 참조). 그러나, 각료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각료선언문 작성은 물론이고 의제선정에 대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일반이사회 의장의 주도로 각료선언문 초안과 그에 대한 수정안까지 회람되었으나, 그 내용에 대한 선·개도국 또는 수출·입국간의 이해대립으로 대부분의 이슈가 미제로 남게 되었다. 그와 같이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 단 4일간의 각료회의 기간에 모든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각료선언문을 작성·발표하는 데에는 각국의 대단한 정치적 결단이 없이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EU와 일본의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주요이슈에 대해 미국과 입장차이를 줄이지 못한 것이 회담결렬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다. 그 외에도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의 실종 및 영향력 약화와 개도국 및 NGO 비중의 상대적 증대도 회담결렬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회담결렬에도 불구하고 지난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하여 농업, 서비스, 공산품 판세인하 등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가장 난관이 예상되었던 농업분야에서 광범위한 시장접근의 개선, 수출보조금의 점진적 폐지 및 국내보조금의 상당한 감축 등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가운데에서도 공산품과는 다른 개방정도,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NTC : Non-Trade Concern)의 구체적 예시 등을 통해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된 각료선언문 초안이 마련되었다는 것도 그와 같은 점을 반영하고 있다. 농업분야 못지 않게 논란이 예상되었던 서비스 분야에서도 모든 분야를 협상대상으로 하되 모든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긴급세이프가드등 규제제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 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해 회원국간에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각료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협상방식

뿐만 아니라 협상의 일정까지 명시함으로써 지난 각료회의에서의 논의 결과가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진전은 공산품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다. 비농산물에 대한 상당한 관세인하, 고관세의 감축 또는 폐지, 경사관세구조의 개선 등에 대한 대체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공산품 분야에서도 비록 구체적 협상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협상방식에 대해 품목별 협상방식, 공식적 용방식 또는 기타 가능한 방식 등을 조화해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대해 미국이 끝까지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결론을 짓지 못하고, 무역·노동기준에 대해서도 미국과 다른 회원국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앞으로 그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투자와 무역·경쟁정책 등의 이슈는 작업반에서의 추가검토를 통해 제4차 각료회의에서 협상방향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최근에 논의가 시작된 바 있는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무역원활화분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 특이할만 하다.

이와 같이, 제3차 WTO 각료회의가 최종 각료선언문 채택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간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각료회의의 결렬로 자칫하면 다자체제가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각료회의 과정에서 노출된 바 있듯이, 일부 선진국의 독주에 많은 개도국들이 심한 반감을 갖고 있고, 비정부단체(NGO)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다자체제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이다. 각료회의의 결렬에 따른 뉴라운드 협상개시의 지연은 NGO들에게 다자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불어 넣었고, 개도국들도 시장개방에 있어서 보수적 성향을 더욱 강하게 드러낼 우려도 없지 않다. 최근에 WTO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중국까지 개도국들의 입장에 가세할 경우 다자체제의 안정성은 크게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시애틀 각료회의의 결렬이후 WTO 뉴라

운드 협상의 논의 재개를 위한 WTO차원 또는 국별차원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당초 빠르면 올해 초부터 논의재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난해 각료회의 직후의 전망과는 달리 그 동안에는 그 논의가 매우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마이크 무어(M. Moor) WTO 사무총장의 주요국 순방, 미·EU 정상회담, EU·일본 각료회의 등을 통한 WTO 및 주요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라운드협상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1월 미국의 대통령선거 등으로 인해 뉴라운드 논의가 활기를 띠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WTO 동향을 살펴볼 때, 금년중으로 뉴라운드에 관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뉴라운드의 출범에는 주요국간의 협상의제에 관한 합의와 회원국간 신뢰구축이 가장 커다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에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간 접촉이 활발해지고 미·EU간에는 협상의제에 대한 상호 절충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오는 7월에 개최되는 G-8 정상회의 이전에 뉴라운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주요국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하고 있다. 또한, WTO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회원국간 신뢰구축 작업에 대한 협의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것도 뉴라운드협상 논의의 재개 가능성을 더해 주고 있다. 현재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쿼드국가(4대 무역국)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뢰구축작업 계획에는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대개도국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증진, 개도국에 대한 UR협정 이행 유예기간 연장, WTO체제의 의사결정방식 개선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포괄적 뉴라운드협상 논의의 재개를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의해 이미 2000년 후속협상이 예정되어 있던 농업 및 서비스분야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중이다. 농업협상은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해 진행중인 바, 이미 지난 3월 23, 24일 제네바에서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협상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제안서 제출사항 및 향후 일정에 관해 논의한 바 있

다. 금년중에는 농업위원회 정례회의를 전후로 6월, 9월, 11월 등 3회 개최될 예정이며, 필요시에 2001년 1월에 추가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비스협상도 서비스이사회의 특별회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바, 지난 2월 25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와 정규회의를 4~6주 간격으로 개최한다는 데에 합의를 보았다. 서비스협상은 협상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구체적인 양허협상의 준비차원에서 당분간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각종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서비스 분류, 스케줄링 가이드라인 개정, 긴급수입제한·보조금·정부조달 등 규범 제정, 국내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MFN 면제검토, 항공부속서 검토 등이 이사회의 산하 위원회 및 작업반을 통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IV. 분야별 주요 예상쟁점

1) 농산물 분야

뉴라운드협상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가장 큰 관심분야가 농산물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농산물 수출국들의 그룹인 케언즈(Cairns)그룹과 미국은 농산물 관세의 대폭인하, 수출보조금의 전면적 폐지와 각종 국내 보조금의 대폭적 감축 등 공산품 수준과 같은 농산물 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정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초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자유화의 범위를 한층 확대하는 한편, 긴급한 상황에서 특정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신축적이고 점진적 자유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수입국들은 농업보호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는 농산물의 비교역적 특성(NTC : nontrade concern)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부각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즉, 농업은 환경보호나 식량안보 측면을 고

려해야 하므로 공산품과는 달리 그 자유화 속도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협상이슈는 제3차 각료회의에서도 모두 논의되었으며, 수출보조금의 폐지 또는 감축폭을 제외하고는 회원국간에 대체적인 의견조율도 끝낸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는 관세의 인하폭, 수출보조금의 폐지속도, 국내보조금의 감축정도, 관세할당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긴급세이프가드의 존폐여부 또는 그의 개선방향, 그리고 유전자 변형식품(GMO)의 수입제한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2) 서비스 분야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뉴라운드 준비 과정에서 선·개도국간 입장차이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난 바 있으나, 서비스 전분야를 협상대상으로 한다는 데에 대부분 국가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오히려, 미국이 해운분야, 일본이 항공분야, 그리고 EU가 시청각 분야에서 자유화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들 분야가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도국들은 인력이동의 자유화 확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 산업여건에 대한 특별고려등 개도국의 이해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의 국내규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등에 대한 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에서 선·개도국간의 입장차이가 크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유화 협상방식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모든 국가에 대해 자유화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공식적용(formula)방식의 협상을 주장하는 데에 비해, 개도국들은 각국의 서비스시장여건을 감안하여 국가간에 항목별로 자유화 범위를 협상하는 '항목별 접근방식'(request and offer)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 두가지 방식의 보완적 활용이 유력한 상태이나, 그의 조화방안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분야에서 격론이 예상되는 또하나의 주요쟁점은 MFN의 예외인정을 줄이는 문제이다. 각 회원국은 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자국의 시장현황을 들어 가급적 많은 MFN 예외 인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바, 모든 국가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차원에서 각 회원국별로 어떠한 분야에 어느정도의 MFN 예외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 외에도 각국이 이미 실시한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느냐 하는 것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3) 공산품 관세인하

공산품 관세인하 분야는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와 같이 우루파이라운드협정상의 기설정의제는 아니지만 대부분 국가가 그의 포함에 합의함으로써 협상이 확실시되는 분야이다. 이는 관세인하가 과거의 모든 다자간 협상에서 가장 주된 협상의제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개도국의 관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일부 선진국의 고관세 품목이 유지되고 있어 그의 개선을 요구하려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에서는 개도국 관심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고관세 제거와 가공도에 따라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사관세구조(tariff escalation)의 개선, 그리고 개도국의 전반적 관세인하 및 양허범위의 확대가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지난 각료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3%미만의 미소관세(nuisance tariff) 철폐여부도 일부국가의 관심사로 남아 있다. 한편, 공산품 관세인하에 있어서는 서비스분야와 마찬가지로 협상방식이 자유화의 범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로서는 공식에 의한 일괄인하(formula) 방식을 중심으로 우루파이라운드협상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방식(request and offer, 관세조화, 무세화 등)이 혼용될 가능성이 높다.

4) 반덤핑

현재 반덤핑이 협상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단언해서 예측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일부

개도국이 반덤핑을 협상의제로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데에 반해, 세계 최대의 반덤핑 조치 발동국인 미국은 그에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WTO 반덤핑협정의 강화를 통해 국내 반덤핑법의 운용이 제약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 의회의 압력으로 현행 반덤핑 법의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덤핑협정의 개정 문제가 아직도 협상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거론되는 이유는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이 그의 의제채택을 지지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지난 각료회의에서는 주요 반덤핑조치국인 캐나다와 EU까지도 반덤핑 이슈를 의제로 채택하는 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의제채택을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반덤핑협정 개정이 협상의제로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반덤핑협정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 이슈가 협상의제로 채택될 경우, 가장 주된 쟁점은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절차 및 기준의 강화와 개도국에 대한 우대기준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덤플링마진 및 피해의 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반덤핑 조치의 시행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며, 특히 개도국들은 그들에게 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덤핑 조사를 종결할 수 있는 덤플링마진의 최소기준(de minimis)과 무시할만한 수입량 기준의 상향조정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제소기준의 강화, 재심절차의 투명성 제고, 분쟁해결규정의 개선,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도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이슈

그 동안 각국의 관심을 모아왔던 환경, 투자, 경쟁정책, 노동기준, 정부조달 투명성,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등 새로운 통상 이슈의 포함여부는 아직까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들 분야는 대부분 현재 운영되고 있는 WTO의 무역환경위원회와 해

당 작업반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검토, 그리고 작업계획 설정을 통해 향후 협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V. 우리의 분야별 입장과 대응방안

1) 농산물분야

뉴라운드 출범시 우리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는 농산물분야이며, 특히 쌀시장 개방문제는 국내적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1986년 우루파이라운드협상의 출범당시와 1999년 뉴라운드 출범을 바로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 수출·입국으로 양분되는 농산물 협상그룹의 구도 및 기본협상방향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 미국을 위시한 농산물 수출그룹(Cairns)은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와 국내보조금의 감축 및 수출보조금의 전면적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등 수입국들은 농산물시장의 자유화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농업여건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가 동참할 수 있도록 보다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뉴라운드에서 우루파이라운드 협상의 결과인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따른 쌀의 관세화, 기타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상당치의 감축, 시장접근 물량의 확대 등 강도 높은 시장개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물론이고 EU까지도 차기 농산물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조치의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국제여론이 거세질 경우 우리나라만이 단독으로 관세화 유예를 주장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우루파이라운드협정에 따라 쌀의 초기 관세화 주장은 무난히 극복할 수 있겠으나, 2004년의 재협상에서는 그와 같은 국제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본이 최근들어 쌀의 관세화 방침을 결정했는 바, 일본의 쌀시장 개방조건에 대한 재협상의 결과가 2004년 우리나라의 재협상에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또한, 뉴라운드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날 경우, 최소보조규정에 따른 감축제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나, 개도국으로서 허용된 농업에 대한 일반적 투자보조와 저소득계층 또는 자원빈약 생산자를 위한 농업투입 재보조 등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기존 농업협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국제논의 동향 및 추세에 따라 다소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우루파이라운드협상에서 매우 어렵게 타결된 현행협정의 기본정신이 무시될 경우 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다시한번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을 관련 국가에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 EU, 노르웨이 등의 국가와 더욱 공고히 연대하여 농산물이 갖는 다양한 기능과 식량안보등 비교역적 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협상을 유도해갈 필요가 있다.

2) 서비스분야

농산물 분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OECD 가입으로 인해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크게 줄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분야의 경우, 과거 우루파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이었으나, 우리나라는 이미 OECD 가입과 IMF와의 협의에 따라 금융시장의 개방은 물론이고 금융구조의 개혁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물론, 금융서비스협상은 WTO 출범이후 두 차례의 추가협상을 통해 새로운 협정이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뉴라운드에서 커다란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의 보다 진전된 자유화협상은 물론이고 단기금융자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본통신서비스협상도 이미 97년 2월 15일 타결, 98년 2월 5일 발효되어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관광 및 유통서비스 등은 이미 상당부분 개방되었으므로 추가협상에 의한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전문적 서비스나 시청각서비스등의 시장개방은 매

우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 및 우리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제고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전문적서비스의 경우 WTO에서는 이미 회계서비스 부문에 있어서의 규범이 거의 완성됨에 따라 이를 변호사나 건축사 등 타부문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거론될 것인 바, 이는 해당부문서비스의 경쟁력제고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뉴라운드 서비스협상에서는 전반적으로 최혜국대우(MFN)원칙에 입각한 강도 높은 자유화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양 허표에서는 서비스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일부조치에 대한 최혜국대우 의무의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양허의 효력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현재상황에서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 해운, 항공서비스의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의 자유화 약속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만, 법률, 시청각, 방송, 환경, 의료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 및 규제철폐 압력이 적지 않을 것인 바, WTO의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상에 명시된 긴급제이프 가드,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제제정논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공산품 관세인하

공산품 관세인하는 우리나라의 공산품 관세인하가 대부분 충분히 인하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최근의 무역자유화 확대정책으로 그 부담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1998년 평균 기본관세율은 공산품 6.2%, 농산물 18.6%로 전체평균은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관세수준은 수입억제기능으로서 국내산업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관세율체계는 8% 중심세율 체제로서 각 품목간의 관세격차가 적어 고관세 품목의 비중도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공산품의 포괄적 관세인하는 원재료나 국산화가 어려운

부품 등의 관세인하를 통해 해당품목 수요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선진국들의 고관세(tariff peak)품목과 개도국들의 전반적인 공산품 관세율을 인하시키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관세화 부문은 뉴라운드의 출범과 관계없이 정보기술협정을 위한 단계별 협상(ITA-I, II) 및 APEC 분야별 조기자유화(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 EVSL)를 통한 무관세화 분야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WTO차원에서 다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비교적 낮은 관세율과 관세인하 및 무관세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공산품 관세인하는 우리시장의 추가개방으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교역상대국의 시장접근개선으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품 관세인하가 뉴라운드에서 논의될 경우, 우리는 선진국의 고관세 품목의 관세인하와 개도국의 고율관세 인하 및 양허확대를 적극 주장하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요 개도국들이 우리업계의 수출이익이 큰 비양허품목에 대해 고관세 뿐만 아니라 수입과정금, 부과금 등을 수입 규제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출확대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정도의 신축성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새로운 통상이슈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등 제1차 각료회의의 결과로 작업반이 설치된 바 있다. 새로운 통상이슈는 현재로서는 협상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OECD차원의 규범화가 선행되는 추세이므로 우리로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규범화가 WTO의 다자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IMF체제를 초기에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촉진정책을 실시하여 M&A 및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전면 자유화하였

고, 제한업종도 대폭 개방했다. 최근에는 외환·자본거래의 자유화와 민영화 계획도 발표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투자인센티브를 확충하고 투자자관계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도 취했다. 1998년 1~11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227건의 69억900만달러(신고기준)을 기록하여 전년동기에 비해 금액면에서 16.4% 증가하고, 전수면에서 31.8%의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M&A에 의한 투자는 1998년 상반기에만 6억 9,899만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28.4%를 차지해 1991년의 10%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김준동, “외국인 투자의 촉진 및 해외직접투자의 효율효과”, (KIEP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1.] 비록 현재로서는 무산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OECD의 다자간투자 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 MAI)의 제정을 위한 협상경험도 갖고 있다. 즉, 개도국까지 포함한 WTO 차원의 진정한 다자간협상에서 투자분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훨씬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뉴라운드를 통한 WTO 차원의 투자규범이 제정될 경우, 우리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개도국 특히 동남아국가들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우리의 해외직접투자는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WTO 차원의 다자간투자규범의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논의대상도 단순한 무역과 투자간의 연계부문에 국한시키기보다는 투자문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쟁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및 그의 이행을 위한 논의가 지역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양자간·다자간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대기업의 내부자거래 및 상호지급보증 등 경쟁제한적 요소를 금지시키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에 대한 논의가 WTO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OECD에서는 경쟁정책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적 사항을 다루는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의 규제에 대한 지침]이 작성되어,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그의 이행이 불가피하다. 뉴라운드는 그와 같은 규범이행에 있

어서도 OECD 비회원국의 무임승차(free-ride)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그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반덤핑조치를 경쟁정책과 연계시키는 국제적 논의가 뉴라운드를 통해 활성화된다면, 그의 다자규범화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로서는 반덤핑의 문제점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측면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올리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다자간규범에 입각한 각국의 효율적인 경쟁정책의 이행은 무역 및 투자유화를 촉진시키고, 이는 결국 우리의 수출증대 및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계적으로 경쟁정책을 실시하는 나라가 60~70개국에 불과한 바,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협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쟁정책관련 국제규범이 강화될 경우 경제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개도국들의 우려를 적절히 감안한 협상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조달의 투명성제고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비록 그 대상이 정부조달 부문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는 보다 광범위한 시장개방과 함께 수입국정부와 수출국기업간의 부패고리를 단절시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조달부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바로 ‘투명성제고’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이미 WTO 정부조달협정에 기본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WTO 정부조달의 체약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일부 WTO 회원국에게만 적용되는 복수간 협정을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OECD에서는 1997년 뇌물방지협약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국내 법규화를 시킨 상태이다. 따라서, WTO 전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조달투명성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이를 기존의 정부조달협정과 통합시켜 WTO 차원의 단일화된 다자간 정부조달협정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다. 정부조달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뉴라운드에서의 논의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가입국으로서, 그리고 OECD 뇌물방지협약을 수용함으로써 우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상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시아 및 남미지역에서 효

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이슈

상기 이슈들 외에 뉴라운드의 협상 대상 분야로 거론되고 있는 각종 이슈중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반덤핑 협정과 무역 원활화 및 우루파이라운드 협정의 이행 관련 이슈라고 하겠다. 현행 WTO 반덤핑 협정은 과거 GATT 체제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반덤핑제도의 성격상 아직도 남용의 여지나 경쟁제한적 요소는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덤핑산정이나 피해결정에 있어서의 명료한 기준설정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거나 또는 보다 근원적으로 덤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덤핑을 경쟁정책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뉴라운드의 반덤핑 협상은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루파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이나 무역원활화 이슈는 교역 확대에 경제정책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리의 정책의지 및 제도개선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이슈에 대한 뉴라운드에서의 논의는 개도국들의 공정경쟁의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우리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슈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협상여부에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분야는 환경과 전자상거래이다. 우리는 OECD의 회원국으로서 환경관련 각종 권고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나, 우리의 환경수준을 감안할 때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규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특정 물질이나 성분의 사용을 규제하거나 원료조달방식 및 공정한 적용기술을 제한할 경우 이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의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환경수준을 제고

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환경기술에 절대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무절제한 무역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와 무역자유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WTO 차원의 다자간 환경규범의 제정 필요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와 유사한 논리는 전자상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내 전자상거래도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은 규모나 기술면에서 선진국, 특히 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무관세화 및 조세신설의 금지 등은 선진국의 무차별적인 수출공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전자상거래에 소극적일 경우 우리는 막대한 시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전자상거래는 OECD와 APEC의 핵심이슈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국내 준비상황을 토대로 이를 다자규범화시킬 경우 수출증대에 주력해야 할 우리기업에게 좋은 활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과 전자상거래 관련 협상여부는 득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조정 및 전자상거래의 기반구축에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VI. 우리기업의 당면과제와 대응 방안

경제의 범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경제가 급속하게 단일 경제권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그와 같은 현상은 곧 기업에게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기업들의 경쟁력 보유여하에 따라 21세기의 새로운 통상환경은 기업들에게 무한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쉽게 도산될 수 있는 위험성도 커지게 된다. 우리기업이 세계의 유수한 선진기업과 경쟁하며 확대된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저렴한 노동비용과 집중적인 자본투자만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도산의 운명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대표적 수출분야였던 섬유 및 의류산업의 쇠퇴도 결국 기술개발의 소홀과 마케팅 능력의 부족이 주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소비자의 수요 및 기술변화추세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고객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이는 기술력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들 스스로가 제품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 동시에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한다. 기술은 결코 급격하게 도약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수 없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축적을 이루어가되, 기술혁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R&D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국제경쟁이 심화될수록 R&D 투자의 거액화 및 기술의 표준화, 기술개발의 위험 및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인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업들과의 전략적 기술제휴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어야 한다. 전략적 기술제휴는 R&D 뿐만 아니라 제품설계, 엔지니어링, 마케팅, 경영기업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일방적 기술이전과는 구별된다. 전략적 기술제휴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간에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도 그와 같은 데에 연유하고 있다. 일방적 기술이전이 아닌 기술제휴를 위해서는 그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체기술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불합리한 선단식 경영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의 국제논의의 흐름을 분석해 볼 때, 머지 않아 경쟁정책, 노동기준, 부패방지는 물론이고 기업지배구조에 이르기까지 국제기준 또는 규범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의제가 다자규범화

될 경우, 산업생산방식, 유통조직 및 근로 조건 등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산, 수출, 유통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기업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무모한 성장경영 정책보다는 내실을 통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견고한 경영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문어발식의 과도한 또는 급격한 성장 위주의 경영전략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며, 무리한 자금조달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와 노사관계의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기업부실화 또는 도산을 초래하는 결과까지 낳게 된다. 기업이 건실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경영과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경영에서 주주와 경영진 및 기타 이해집단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메카니즘으로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그의 핵심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OECD는 4년동안의 논의 끝에 1999년 5월 26~27일 개최된 각료이사회에서 '기업지배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확정한 바 있다.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전문(Preamble), 본문(Principles), 주석(Annotation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다시 ① 주주의 관리, ② 주주의 동등대우, ③ 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④ 공시 및 투명성, ⑤ 이사회의 책임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동 원칙은 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 보다 강력한 규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IMF와 세계은행이 동 원칙을 자금지원과 연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투자대상국을 결정하는 데에 동 원칙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결국 기업경영의 범세계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확대되어 가는 환경에서 기업이 거대한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면서 효율적인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즉, 상품의 개발에서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기업활동을 세계 각 지역의 비교우위에 맞게 최적 배치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동기가 저임노동력의 활용등 수동적 측면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투자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경쟁기업의 행동을 모방하는 이른바 밴드웨건(bandwagon) 현상까지도 보이고 있다. 또한, 투자지역도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에 심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투자기업의 현지화가 저조하고 재무구조 역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보다 치밀한 준비와 조사를 해야 한다. 즉, 해외투자 결정 자체뿐만 아니라 투자지역 및 투자방법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현지 투자여건 및 해당 투자사업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 등에 관한 세밀한 타당성 조사가 기초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저렴한 임금등 생산요소의 가격차를 목표로 하는 투자보다는 범세계적 시각에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 인력, 경영 전략 등에서 현지기업과의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독점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공요소는 현지 진출기업의 현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적자원은 물론이고, 원자재, 시장, 금융, R&D, 경영관리 등 매우 포괄적 내용의 현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지국의 기업으로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현지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확산추세에 맞추어 각 개별기업은 전자상거래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그의 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를 배후 시장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거래방법을 통하여 상거래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1998년 말 현재 1억 4,000만명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사용자는 2000년경에는 3억명을 넘어서고 시장규모도 3,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WTO, OECD 등 세계의 주요 경제정책 의제로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국가간 무역이 촉진되고 거래비용이 낮아지면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형성은 더한층 가속화 될 것인 바,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전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형구매자는 웹사이트에 입찰제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공급업자는 일반상점에서 제공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거대한 인터넷 시장에서 선진기업들과 효율적으로 경쟁하는 데에는 개별기업들의 엄청난 노력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바, 최고경영자의 주도아래 자사의 목표시장(target market)을 구성하는 소비자들의 특성 및 프로필 등을 확실히 규명하고, 그에 기초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인터넷의 특성상 개별기업은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전자상거래를 추진해야 한다. 국제적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외국어로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공간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쇼핑몰의 구축등 공급측면 못지 않게 전자상거래의 이용자, 즉 수요분야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업은 경영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를 기업의 존립의 문제로 인식하고 철저한 환경관리를 실현해 가야 한다. 아직까지는 WTO차원의 무역-환경에 관한 다자간 규범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논의현황을 살펴볼 때, 환경관련 WTO규범은 머지않아 제정될 것이

분명하다. WTO차원의 규범이 아니더라도, 이미OECE는 국제환경협약상의 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군에 대한 무역규제를 반대하지 않으며, 환경목적의 무역규제를 인정해 왔다. 더욱이, 환경목적의 무역규제는 각종 국제환경협약을 통해 일반화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으로서는 기후변화협약, 위싱턴협약, 바젤협약, 몬토리올의정서, 런던dumping 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거론되고 있는 각종 국제환경규제조치들은 생산, 수출, 소비, 폐기 등 제품의 전주기에 걸쳐 원가상승 및 수요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

라서,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들의 제품은 수입국의 무역규제조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상승 및 수요감소 등으로 자연히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환경규제 강화이전에 기업차원에서 사전예방적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환경친화사업장을 구축하는 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환경영영체제를 구축하고 환경관련법규 및 행정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사업장의 정밀진단을 통해 환경개선필요 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